
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7월 1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, 서울교통공사를 설립·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,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시민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을 2022회계연도 우리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상기관(출자기관) : **서울교통공사**
- 나. 주요 출자사업(전체 사업현황 및 예산내역 **[붙임]** 참조)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
 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(1역사 1동선 구축 관련)
 -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
 -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
 -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

3. 참고사항

가. 기관현황

기 관 현 황

- ▶ 설립일자 : 2017. 05. 31
- ▶ 설립목적 : 지하철(1~8호선) 건설·운영 및 부대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
- ▶ 소재지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(용답동)
- ▶ 조직현황('22. 2월 기준)
 - 본 사 : 사장, 감사, 6본부, 6실, 42처
 - 현 업 : 1부문, 2원, 1단, 10센터, 58사업소
- ▶ 인력현황('22. 2월 기준) : 정원 16,306명 / 현원 16,606명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다. 예산조치 :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(추경2차)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출자사업 현황(추경2차) 1부. 끝.

붙임	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출자사업 현황(추경2차)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'22년도 출자사업 현황(추경2차) : 8개 사업, 45,200,080천원*

※ 사업개수 및 사업별 예산액은 예산편성·심의 과정에서 변동 可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출자액(안)	비고
계	45,200,080	
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1,000,000	- 국비매칭
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961,000	
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	12,289,000	- 1역사 1동선 확보 관련
지하역사 공기질 개선	15,697,080	- 국비매칭
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	1,800,000	
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	8,153,000	- 국비매칭
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	2,600,000	
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	2,700,000	